

2015 중랑구 복지서비스 안내

본 안내서의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
(www.jungnang.seoul.kr)
e-Book자료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CONTENTS

I 복지서비스 사업 안내

1. 저소득시민 복지서비스	3
2. 노인 복지서비스	43
3. 장애인 복지서비스	53
4. 여성·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81
5.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89
6. 주거 복지서비스	107

II 사회복지기관 자원연계 프로그램 안내

1.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127
2. 가정·건강·상담 복지센터	179
3. 중랑구 사회복지 유관기관 현황	199

저소득시민 복지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5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서비스	8
3. 자활근로사업	12
4. 근로장려금제도	14
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15
6. 차상위 우선돌봄	17
7. 생업자금 융자	18
8. 긴급복지 지원	19
9. 희망온돌 위기가정 긴급지원	21
10. 의료급여제도	22
11. 의료급여 대지급금 · 보상금 · 상한제	23
12. 산정특례 등록	24
1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5
14. 의료급여 상한일수 · 연장승인 · 선택의료급여기관	26
15. 암환자 의료비지원	27
1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9
17.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30
18. 한부모가족	31
19. 희망두배 청년통장	32
19. 희망플러스 · 꿈나래통장	33
20. 희망키움통장	34
21. 희망키움통장 II	35
22. 내일키움통장	36
23. 통합문화 · 스포츠강좌 이용권	37
24.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39
25. 차상위계층 범위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출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보장단위 :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의료,교육,자활,이행급여 특례)를 행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가구규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산정 : 30% 또는 15%)	
B×100%	부양능력 없음	
(A+B)×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일반수급자의 있음 기준과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

-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인복지법 4급 이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 화상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환자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및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서비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 보편성의 원칙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15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 (A)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 임차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지원

※ 최저주거기준 :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즉,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 실시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로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장시설이 아님)
- 노숙인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소록도 병원 입원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 이탈주민 또는 소록도병원 입원 수급자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기관이 주거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거주자
-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이행기 보전액

▶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금번 맞춤형급여 체계로의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금액을 보장

-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지급

▶ 지급 대상 : 2015년 6월 현금급여(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급된 수급자로서, 맞춤형급여 개편
으로 2015년 7월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 서비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급여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서비스내용 : 행복e음을 통한 보건복지부 입금만을 허용하므로 본인이라도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이 불가하며, 타 용도로 사용(카드결제, 대출금 납입 등) 불가
-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참여 금융기관에서 발급신청

정부양곡 할인지원

- 서비스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비스내용 : 1인당 월 10kg (단, 5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2014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 (20kg 1포대 22,200원)
- 신청방법 : 매월초 동 주민센터에 신청시 공급희망지(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양곡대금은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 단,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시 현금납부)

교육급여

	초	중	고	비 고
입학금·수업료	X	X	O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	X	X	O	1인 129,500원 (연1회)
부교재비	O	O	X	1인 38,700원 (연1회)
학용품비	X	O	O	1인 52,600원 (26,300원/연2회)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1인 600,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750,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

자활급여

- 자활근로인건비 :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의료급여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 2종 :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시외 통화료 중 월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 1만원 사용 한도내) 30% 감면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접속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영구)임대주택 신청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4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서비스 대상

-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 차상위계층 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전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활터전 마련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	기 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자활 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자활장려금(구, 자활소득공제) 사업

- ▶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30%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근로장려금 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소득 지원

서비스 대상

- ▶ **지급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
 - ① 배우자·부양자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
 - ② 총소득 기준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가) 배우자 있으나 부양자녀 0명 :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 나) 부양자녀 1명 : 총소득기준금액 1,700만원
 - 다) 부양자녀 2명 :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 라) 부양자녀 3명 이상 :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원
 - ③ 주 택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가구
 - ④ 재 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서비스 내용

- ▶ 양자녀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매년 5월 세무서 방문·우편·인터넷(www.eitc.go.kr)·전화·휴대전화 신청
- ▶ **지급절차** :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년1회 지급,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총당 후 남은 금액 지급)
-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 **문 의** : 국세청 ☎ 12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경감을 통한 의료 지원

서비스 대상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기본재산액

(단위 : 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13,500	8,500	7,250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구 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75세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30일) 기본식대의 20%

»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 청**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차상위 우선돌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여 차상위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 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대상

» 기본원칙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지원 등 기존 보호제도 우선 연계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책정대상자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자원 등에 대해 연계 지원 실시
-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 각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부 처	사 업 명	부 처	사 업 명
보건복지부	· 정부양곡지원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 푸드뱅크 연계	산업통상자원부	· 난방연료긴급지원 · 전기요금긴급지원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노후배관교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	산림청	공공산림 가구기사업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문화재청	궁능무료입장
교육부	· 대입 기회균형선발 · 국가장학금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 채무조정 문할상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미래창조과학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6

생업자금 융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자활의지, 사업전망·기술·경영 능력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2,502,493원, 2015년 4인가구 기준)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서비스 대상

구 분	내 용
대출조건	고정금리 3.0%, 5년거치 5년상환
대출금의 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2,0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담보범위 내 (5,000만원 한도 내)
대출유형	무보증대출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인요건
	연간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자 중 1명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담보대출
	금융 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 추천 금액 (5,00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금대여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첨부)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긴급복지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생계비

(금액단위 : 원/월)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지원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 의료비 : 1회 3백만원까지(동일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실손보험가입자 원칙적 제외)

■ 주거비

(금액단위 : 원/월)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지원액	365,800	607,800	801,700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해당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금액단위 : 원/월)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지원액	506,300	863,700	1,117,500	1,370,200	1,624,000	1,877,800

■ 교육지원

(단위 : 원)

구 분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액	209,400	333,300	· 408,4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

(단위 : 원/회)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액	90,800	600,000	750,000	500,000

■ 관련 민간 기관 단체 연계 지원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소득·재산·금융 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원/월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문 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 02-2094-1610~5

희망온돌 위기가정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기에 단기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위기 해소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 대 상 : 최저생계비 200% 이하 위기가정

➤ 지원내용

지 원 항 목	지 원 액	지 원 횟 수
냉난방비	최대 월30만원	최대 연3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최대 월30만원	

복합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 대 상 : 복합문제를 가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위기가정

➤ 지원내용

지 원 항 목	대 상	지 원 액
긴급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등	최대 500만원
긴급주거비	임차보증금, 임시 주거비, 주거복구비 등	최대 500만원
기타긴급지원	재해·재난으로 인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복구비 등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5개 거점기관에 신청

거 점 기 관	연 락 처	지 원 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중화1동, 상봉1동, 상봉2동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면목본동, 목1동, 신내2동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망우본동, 망우3동, 면목2동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0	중화2동, 목2동, 신내1동, 중증장애인세대

➤ 문 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 02-2094-1632

의료급여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대상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선정기준

- 1종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수급자
② 행려환자
③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액

구 분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PET등 : 암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 등

신청방법 및 문의

-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7

의료급여 대지급금 · 보상금 ·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대지급해 주거나 본인부담금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기회 확대

서비스 대상

▶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 대불금 지원

- 대지급 기준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대지급 상한 :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

▶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1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7

산정특례 등록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 강화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 ※ 다만,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서비스 대상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적용기간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최대 1년 6개월)
- 뇌혈관·심장질환자 :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
- 적용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로 소급 (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초과 신청 : 신청일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보장기관(구)생활보장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보장기관(구)생활보장팀에서 등록
-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 본인부담면제자(18세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급여 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전액 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근거법령 및 문의

-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7



의료급여 상한일수 · 연장승인 · 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고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할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서 그 병 · 의원을 이용하는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

- ▶ 의료급여일수 : 병 ·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함
- ▶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등록 희귀난치성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급여 연장승인

- ▶ 신청일수
 - 등록 희귀난치성 또는 등록 중증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 : 90일 (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 적용대상
 - 등록 희귀난치성 또는 등록 중증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90일(1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365일+90일(1차)+90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 지원내용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포함)
-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 암 발견자,
 -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 2015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88,000원 이하, 지역 87,000원 이하
- 소아암환자 :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단위 : 원)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소득기준	1,851,843	3,153,144	4,079,064	5,004,987	5,930,910	6,856,830

(단위 : 원)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재산기준	206,408,706	237,614,964	259,819,281	282,023,670	304,228,059	326,432,373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지급 (실제 지원금액 100만원 정도임)
-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일부 본인부담금 연간 200만원까지 지급
- 폐암환자 : 법정 본인부담금 100만원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소아암환자 : 연간 2,000만원 (백혈병 3,000만원)까지 지급

▶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소아암환자 : 만18세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 보건소 등록 및 지원신청
- 소아암환자 : 보건소 신청 → 소득·재산조사(복지정책과) → 선정

▶ 근거법령 : 암관리법

▶ 문 의 : 중랑구청 보건소 의약과 ☎ 02-2094-092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내용 :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50만원, 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6

심장병 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심장병, 얼굴기형, 콩팥이식, 골수이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
- 서비스내용 : 수술 위한 정밀 검사비, 수술비, 재입원비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FAX, 인터넷 접수
- 문 의 : 한국심장재단 ☎ 02-414-5321~3

실명 예방 사업

- 지원대상 :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만10세 미만 어린이 안과수술비
- 서비스내용 : 안과 사전검사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 의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1088

정신보건 및 알콜상담 센터

- 정신보건센터 : 구청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 <http://www.kamhp.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 <http://www.counselling.or.kr>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 <http://www.onmaum.com>
- 알콜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g-health.kr>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 미만
- 재산기준 : 2015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 미만

구 분	가 구 기 준	소 득 기 준	재 산 기 준
일 반	환자가구	300%	300%
	부양의무자가구	500%	500%
혈우병	환자가구	400%	1,000%
	부양의무자가구	600%600%	1,200%
고혈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환자가구(3인이하)	1,000% (1,200%)	1,000%
	부양의무자가구(3인이하)	1,200% (1,400%)	1,200%

» 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최저생계비(원)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 2015년 가구별 최고재산액 <<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최고재산액(원)	68,802,902	79,204,988	86,606,427	94,007,890	101,409,353	108,810,791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본인부담금), 간병비(월 30만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월18만원이내), 특수식이구입비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보건소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복지정책과) → 대상자 선정

▶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문 의 : 중랑구청 보건소 의약과 ☎ 02-2094-0924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중증질환자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진단서·소견서 첨부한 자
- ▶ 제외대상 : 만65세이상의 노인, 보장시설입소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용

- ▶ 서비스 내용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청소, 양육보조, 활동 및 정서적 지원, 간병지원(체위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단가 및 제공시간

(단위: 월, 원)

구 분	월24시간		월27시간		비 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금 액	면제	17,520	9,450	19,710	

※ 제공시간 : 월24시간, 27시간 중 이용자가 선택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만 18세(취학시 만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으로 지원연령 연장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30% 이하(청소년 한부모 150% 이하)

서비스 내용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12세 미만 자녀(월 10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연 5만원)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분기 86,400원) ← 서울시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월5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15만원(기초 수급권자 가구 제외)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 실비(입학금 및 수업료) ⇒ 기초 수급권자 가구 제외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기초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67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서울거주, 만18세 ~ 34세 이하
- 소득 인정책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2016년부터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적용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소득 중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일 경우만 신청자격으로 인정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총 72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가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 제외대상
 - 자영업자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1인사업자는 신청가능)
 -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가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희망키움통장 I·II 참여 및 수혜가구 (디딤씨앗통장 참가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저축기간 : 24개월, 36개월
- 적립내용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구 분	월 적립금액 (단위 : 만원)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	근로 장려금		
기초수급자	5, 10	5, 10	720만원 + 이자	본인적립금 360만원
비수급 저소득자	5, 10, 15	2.5, 5, 7.5	810만원 + 이자	본인적립금 540만원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신청기간 : 매년 서울시에서 별도 공고
- » 문 의 : 중랑구청 복지복지과 ☎ 02-2094-1633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탈빈곤 토대 마련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사업공고일 기준)
희망플러스통장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③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꿈나래통장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 인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③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희망플러스통장

- 지원내용 : 수급자는 5/10만원, 저소득층은 10/20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3년간 저축하면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 지원 (이자 별도)
- 저축목적 :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훈련비용

» 꿈나래통장

- 지원내용 : 참가자는 3/5/7/10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을 지원함 (이자 별도)
- 저축목적 : 자녀교육자금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희망플러스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꿈나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92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촉진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이행·의료·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시설수급가구 (소득요건 충족시)
- 1가구 1회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불가
 - ※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혜택을 받은 재(가구)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서비스 내용

-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및 민간 매칭금 지원(단, 민간 매칭금은 '13년까지 가입가구에 한함)
- ▶ 지원개요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적금상품)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기준) → 3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전액 지급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희망키움통장 II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 ※ 가구범위 : 기초생활수급제대상 동일가구기준 준용(별도가구 특례 인정)
- 1가구 1회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불가
 - ※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혜택을 받은 재(가구)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II) 가입 가능
 -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우선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서비스 내용

- ▶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 지원개요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적금상품)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전액 지급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내일키움통장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촉진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희망키움통장에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과거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원은 가입 불가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불가
 -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내일키움통장 특별중도해지, 만기 지급 해지한 자는 재가입 불가
-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불량자도 신청은 가능함)

서비스 내용

- ▶ 지원내용 : 3년간 개인 저축에 대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 지원개요 : 매월 본인 저축액(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 내일키움 장려금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2(매출 10%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지급),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 내일키움 수입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15만원),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자활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통합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사회배려계층에게 다양한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불어 행복한 문화복지사회 구현

서비스 대상

▶ 통합문화이용권 : 2014년부터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용권 통합

문화 누리 카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거주자 포함), 법정 차상위계층(만6세 이상,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개인별 카드 발급 (연간 5만원)	
	신청 절차	오프 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자격확인 → 신청후 7일 이내 발급 → 2시간 이후 사용
		온라인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회원가입 후 신청 → 자격확인 → 카드발급 및 수령(농협 영업점 또는 자택 배송) → 카드 수령 등록 후 사용 ※ 본인인증수단(핸드폰, 공인인증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문화 누리 사업	참여 대상	• 거동이 불편해 자발적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초고령자 등 • 가까운 곳에 문화시설이 부족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산간 벽지 거주자, 복지시설 거주자 등	
	내용	지역 및 대상을 고려한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	
	참여 방법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의 '기획사업 안내' 메뉴 이용 또는 각 지역주관처 홈페이지 및 전화예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만5세~만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자 없을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포함)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 (이용권카드 지급)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r)에서 직접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신청(대리신청)

※ 2015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2015. 2. 9. ~ 4. 30.까지 신청하고
카드발급시 ~ 11.3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사업은 하반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16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운영방식은 2016. 1~2월 사이에 공지되며,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랑구청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 02-2094-1834 / 스포츠강좌이용권 : 02-2094-185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함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인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인
소득기준	4,137,456	4,939,925	5,510,909	6,081,895	6,652,881	7,223,865	7,794,851
재산기준	5억원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 : 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33%이하		33%초과 66%이하		66%초과 10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203,702	205,000	407,405	145,000	617,281	75,000
2인	346,845	355,000	693,691	235,000	1,051,048	115,000
3인	448,697	430,000	897,394	285,000	1,359,688	145,000
4인	550,548	530,000	1,101,097	350,000	1,668,329	175,000
5인	652,400	625,000	1,304,800	415,000	1,976,970	210,000
6인	754,251	725,000	1,508,502	480,000	2,285,610	240,000
7인	856,102	820,000	1,712,205	540,000	2,594,251	270,000

차상위 계층 범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액-기초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율

구 분	특 성	비 고
한부모가족	만18세(취학시 만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130%
차상위 장애인	등록장애인	
차상위 자활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자	부양의무자
우선돌봄 차상위	타 차상위자격 미취득자	

노인 복지서비스

1. 기초연금	44
2.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45
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6
4.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47
5.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48
6. 어르신일자리 취업알선	49
7. 75세 이상 부분·완전틀니 임플란트 지원	50
8.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51
9. 치매치료비 지원	52

기 초 연 금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노 인 단 독	노 인 부 부
선정기준액	930	1,488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분 - 상시근로소득공제(1인당 52만원×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 = (일반재산합계 - 기본재산액(1억3천5백만원))×재산소득환산율(5%)×12개월

㉡ = (금융재산합계 - 2,000만원)×재산소득환산율(5%)×12개월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고 202,600원 ~ 20,000원
부부가구(1인당)	최고 162,080원 ~ 20,000원

※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급, 부부 수급일 경우 20%공제 후 지급함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기초연금법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23

단순무임카드(시니어패스)

-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서울시민인 경우 주소지 동 이외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
- 주민센터에서 기수령한 재고 카드 이용하여 단순무임카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경로식당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이용방법** : 경로식당 운영기관에 이용 신청하여 대상자 선정 후 이용

기 관 명	연 락 처	소 재 지	급식일자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02-493-9966	겸재로 9길 45 (면목동)	6회 (월~토)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용마산로 228 (면목동)	6회 (월~토)
시립대중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신내로 115 (신내동)	6회 (월~토)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봉화산로 153 (상봉동)	6회 (월~토)
유린원광중합사회복지관	02-438-4011	신내로 56 (신내동)	5회 (월~금)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02-3421-4800	신내로 15길 175 (신내동)	6회 (월~토)
구립중화경로복지관	02-436-1390	동일로 138길 28 (중화동)	5회 (월~금)
나눔의 집	02-434-9345	용마공원로 5가길 69-6 (망우동)	5회 (월~금)
중화동교회	02-435-0046	동일로 139길 10 (중화동)	5회 (월, 화, 목, 금, 토)
사랑의 집	02-495-2517	송림길 91 (망우동)	5회 (월~금)
동서울중앙교회	02-494-7110	면목로 29길 37 (면목동)	6회 (월~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밀반찬배달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 **이용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

기 관 명	연 락 처	담 당 동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02-493-9966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면목본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7동
시립대중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신내2동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상봉1동, 중화1동
유린원광중합사회복지관	02-438-4011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동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02-3421-4800	중화2동, 묵1동, 묵2동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02-976-2808	묵1동, 묵2동 (밀반찬만 배달)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2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65세 이상 노인
- 대상자

서비스대상자	① 장기요양등급 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자
--------	---------------------------------------

서비스 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서비스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100% 미만	100%이상~130% 미만	130%이상~150% 이하
27시간(9일)	A-가형 무료	A-나형 18,000원	A-다형 37,000원	A-라형 42,000원	A-마형 48,000원
36시간(12일)	B-가형 8,280원	B-나형 24,000원	B-다형 49,000원	B-라형 56,000원	B-마형 64,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35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함

서비스 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 등급(1·2·3·4·5등급)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 급여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 서비스 부담금
 - 시설급여 수혜자는 20% 본인부담, 재가급여 수혜자는 15% 본인부담
 - ※ 본인부담금 이외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신청방법

- 등급판정신청(공단) → 방문조사(공단) → 등급판정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중랑구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전문 요양원

• 서울시립중랑노인요양원 ☎ 02-437-0144 • 서울꽃동네신내노인요양원 ☎ 02-490-2600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구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장애인 3~4등급 자 또는 중증질환자 중 가구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서비스 내용

- ▶ **서울재가관리사 4명이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제공내용**
 - 개인활동 서비스 : 목욕, 용변수발, 병원진료 등 외출 시 부속동행, 이발 등
 - 가사지원 서비스 : 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 사회적 서비스 : 행정관청 업무대행, 취미, 사회활동 조장 등
 - 서울재가관리사와 유사서비스(데이케어센터·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서울재가간병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대체 가능한 대상자는 서비스 전환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외(A,B) 해당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미만 장애인 1~2등급자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서비스제공시간 : 주 1~3일**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24

어르신일자리 취업알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 연초 중랑구청, 사업수행기관(복지관 등)에서 사업단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선발 실시함

▶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수 행 기 관	연 락 처
중랑구청	02-2094-1724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02-493-9966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02-3421-4800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02-2207-3563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436-0500
시립대중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011
신내종합사회복지관	02-3421-3400

- ▶ **대상자** :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선발제외자 : 기초연금 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정부부처(보건복지부 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 **선발기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발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24

취업알선기관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www.k60.c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누리(www.100senuri.go.kr)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중랑구 관할 북부고용센터 ☎ 02-2171-1700)
-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

75세 이상 부분·완전틀니, 임플란트 지원

만 75세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부분/완전 무치아 노인에게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하여 식생활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만75세이상 틀니와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

서비스 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크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임플란트 평생 2개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율	20%	30%	50%
대 상	의료급여1종,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2종, 차상위(만성질환자)	건강보험 (지역, 직장)

신청절차

» 병원진료 후 등록신청서 발급 → 대상자 사전등록(의료급여 : 구청, 건강보험 : 치과병원) → 등록후 서비스 이용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0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패턴을 향상시키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인	1,846천원	55,665	39,191	57,423
		60,377	41,758	61,184
2 인	3,719천원	113,621	124,575	115,136
		121,063	132,735	122,677
3 인	5,308천원	161,683	177,862	164,396
		172,273	189,512	175,164
4 인	5,969천원	182,127	199,987	185,538
		194,056	213,086	197,691
5 인	6,318천원	193,298	211,949	197,614
		205,959	225,832	210,558

서비스 내용

» 건강상담 : 월 1회(10분 이상)

» 운동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주3회(월 12회 이상)

구 분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수중운동	월 10만원 (정부 9만원, 본인 1만원)	12개월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23

치매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 다만, 60세 이하의 경우는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지원

서비스 내용

- ▶ 지원내용 :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비급여항목 제외한 본인부담금
- ▶ 지원금액 : 1인당 3만원/월 범위 내 지원(연 36만원 상한)
- ▶ 지급방법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
- ▶ 지원기준 : '15년도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평균 100%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인
직 장	47,165	94,100	135,442	151,857	161,683	169,970	178,944
지 역	26,513	97,779	149,772	167,541	177,862	186,600	196,409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중랑구치매지원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 ▶ 구비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신청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치매진단결과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필요시)
- ▶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 ▶ 문 의 : 중랑구치매지원센터 ☎ 02-435-7540
중랑구청 건강증진과 ☎ 02-2094-0853

장애인 복지서비스

1. 장애인 등록제도 안내	54
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57
3. 장애수당	58
4. 장애인 연금	59
5. 장애아동 수당	60
6.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61
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2
8.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63
9. 발달재활 서비스	64
10. 장애인 의료비 지원	65
11. 장애인 보장구 지원	66
12.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67
13. 장애인 활동지원	68
14.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69
15.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70
16.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71
17.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	72
18.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3
19.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지원	74
20. 정신건강 토달케어서비스	75
21. 기타 장애인 복지시책	76



장애인 등록제도 안내

장애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15종이 있음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	읍면동	→	의료기관	→	읍면동	→	연금공단	→	읍면동
등록신청		진단의뢰		장애진단서발급		심사요청		심사 및 결과통보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14.11.14)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도 장애등록 신청이 가능함(2015.5.5일 시행예정)

▶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심사처리기간은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공단 접수일로부터 약 21일 소요됨
- 신청인의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 이송내역에 대해 확인한 다음 전산 송신으로 심사 의뢰함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진료기록 직접 확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심사요청 반려가능
- 장애심사결과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하도록 할 수 있음
- 직접 진단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장애인등록일 : 장애등급결정일
-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함
- 두 개 이상의 중복 장애를 심사 의뢰한 경우에 공단은 장애 종류별로 각각 “장애심사결정서” 통보
- 한 가지 장애를 심사 요청했으나 사실 상 중복장애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분할하여 심사하면 각각 심사결과가 통지됨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행복e음 처리 및 기존 장애인 등록증 회수, 재발급을 실시하고,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함

▶ 심사결과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장애등급결정서 중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반드시 심사결과와 다른 장애와 중복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 기존장애인이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하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공문을 통지할 때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함.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2013.01.27 시행)

구 분	정 의	확 인 자 료
한국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결혼이민자 (F-6, F-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혼인증빙서류
외국국적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F-4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재외국민 (국적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사본)

▶ 장애인등록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장애등급심사

- 장애심사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므로, 장애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등(번역공증본과 원본)을 제출하도록 안내

▶ 자격확인 주의사항

-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외국인 등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유무를 확인 한 후 등록업무를 시작하여야 함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10조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장애등록 진단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진단서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장애등급 조정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대상 제외
- 검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대상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서비스 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지원

- 기초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직권재진단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는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수급자 직접청구, 의료기관 청구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단위: 월, 원)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연금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구 분	단 독 가 구	부 부 가 구
소득인정액	930,000	1,488,000

서비스 내용

- **기초급여** : 월 20,000원~200,000원 차등지급 (소득보장성격의 연금)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최고 320,000원 (1인 160,000원)
- **부가급여** : 월 20,000원~280,000원 차등지급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단위: 월, 원)

구 분	기 준	기 초	부 가	지자체급여
기 초	18~64세	200,000	80,000	30,000
	65세이상(재가)	0	280,000	30,000
	65세이상(시설특례)	0	70,000	30,000
	65세이상(시설신규)	0	0	30,000
차상위	18~64세	20,000원 ~ 200,000원	70,000	30,000
	65세이상(특례)	0	140,000	30,000
	65세이상(신규)	0	70,000	30,000
차상위 초 과	18~64세	20,000원 ~ 200,000원	20,000	0
	65세이상	0	40,000	0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장애인연금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아동 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포함
-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단위: 월, 원)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최저생계비의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구 분			월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20만원
		차상위계층	15만원
		시설수급자	7만원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자	10만원
		차상위계층	10만원
		시설수급자	2만원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자녀 (초·중·고생)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가구원수(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득인정액(원)	802,465	1,366,362	1,767,594	2,168,828	2,570,061

- ▶ **지원제외** :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서비스 대상

- ▶ **학비(고등학생)**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 **교과서대(고등학생)** : 1인당 129,500원 지급(연1회)
- ▶ **부교재비(초·중등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 1인당 38,700원 지급(연1회)
- ▶ **학용품비(중·고등학생)** : 1인당 52,600원(학기별로 26,300원 연2회)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 유도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단위 : 원)

가구원수(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득인정액	1,851,843	3,153,144	4,079,064	5,004,987	5,930,910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용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용자한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용자이율	연 3% 고정금리	
용자기간	최대 5년거치 5년상환 (용자신청자 선택에 따라 상환가능)	
자금의 종류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②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③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④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⑤ 자기개발 훈련비 ⑥ 의료비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①, ②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용자불가	
용자요건	무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 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 배기량 50cc미만인 것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용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용 자 기 간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3%	5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발달재활 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18세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장애에 준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소득수준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단위: 월, 원)

가구 원 수	1 인	2 인	3 인	4 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307,000	4,648,000	6,635,000	7,461,000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 서비스 이용 가격

(단위: 원)

구 분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본인부담액	면제	20,000	40,000	60,000	80,000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제공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장애인

서비스 내용

구 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 래	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직접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2차 의료 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 원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 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 서비스 신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보장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수급권자 :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수급권자 :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 지원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함.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지급가능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불가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1종, 2종 수급권자)**

- ①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장구 처방 → ② 수급자격 결정신청(읍면동) → ③ 시군구 적격여부 판단 → ④ 판매업자로부터 보장구 구입 → ⑤ 보장구 검수확인 → ⑥ 시군구로 급여비 청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서비스 대상

▶ **장애종별**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우선순위**

-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② 기초수급자 ③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인
- ④ 재가장애인 ⑤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 내용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장애 구분	교 부 품 목
지체 및 뇌병변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 유리컵 및 받침 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심장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제출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활동지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매월 이용가능한 급여량(월 한도액)

■ 기본급여

■ 추가급여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	추가급여액(시간)
1등급	1,040,000원(약18시간)	최중증 1인가구 · 최중증 취약가구	2,411,000원 (273시간)
2등급	834,000원(약94시간)	중증 1인가구 · 중증 취약가구	705,000원 (80시간)
3등급	628,000원(약71시간)	기타 1인가구 · 기타 취약가구	176,000원 (20시간)
4등급	422,000원(약48시간)	출산가구	705,000원 (80시간)
		자립준비	176,000원 (20시간)
		학교생활	89,000원 (10시간)
		직장생활	352,000원 (40시간)
		보호자일시부재	176,000원 (20시간)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634,000원(72시간)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신청(연중 수시)

» 근거법령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보행상 불편과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을 보조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회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 내용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차량을 통한 이동 및 안내보조

■ 이용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중 신장 1~2급, 시각1~3급 등록장애인

■ 이용방법 : 전화신청 (☎ 02-2092-0000)

■ 이용요금 : 5km까지 2,000원 / 5km 초과시 500m당 100원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이용요금 : 무료

■ 이용방법 : 중랑구 홈페이지(<http://www.jungnang.seoul.kr>) 확인

» 장애인 해피콜택시 : 콜택시 차량을 통한 이동편의 제공

■ 이용요금 : 일반택시 요금과 동일(단, 승객 콜비 제외)

■ 이용방법 : 전화신청 (☎ 02-555-8787)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

■ 이용대상 : 지체 및 뇌병변 1·2급 중증장애인, 기타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이용방법 :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 및 전화신청(☎ 1588-4388)

사업 내용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써 사회활동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서비스 대상

▶ 대 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

서비스 내용

▶ 카드의 종류

-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
- 장애인 단순무임카드
 - 어린이(만6세~12세), 청소년(만13세~18세), 일반(만19세 이상)
- 중증장애인용 단순무임카드
 - 서울시에 거주하는 1~3등급의 장애인
 -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청소년용 중증장애인 단순무임카드 발급
 - ※ 지하철 단말기를 두 번 태그하여 장애인과 보호자 통관

▶ 서비스 내용 : 서울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 그 외 지역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충전 후 사용가능

분실신고 및 신청방법

▶ 분실신고

-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카드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상담센터에 신고
(신한카드 ☎ 1544-7000, 신한은행 ☎ 1544-8000)
- 단순무임카드 : 신한은행 상담센터, 동 주민센터는 본인 방문 신고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재발급시 은행에 3천원 수수료 납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60 세 이상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769	1,538	2,307	24,280	47,165	70,377	3,571	26,513	62,319	24,944	47,729	71,216
2인	1,549	3,099	4,648	47,165	94,100	141,277	26,513	97,779	156,072	47,729	95,252	143,264
3인	2,212	4,423	6,635	67,466	135,442	202,271	57,497	149,772	221,301	68,276	137,248	207,444
4인	2,487	4,974	7,461	75,867	151,857	226,818	71,317	167,541	245,357	75,980	153,998	235,011
5인	2,633	5,265	7,898	80,471	161,683	243,784	78,397	177,862	261,503	81,424	164,396	253,393

▶ 장애(질병) 및 연령 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만60세이상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 코드 G,M,I 및 R81, E10~15) 중 제출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연령무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연령무관

서비스 내용

- ▶ 서비스 시간 : 월4회(회당 1시간)
- ▶ 서비스 내용 :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및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 ▶ 이용기간 및 이용가격 : 10개월 지원
 - 월 4회 제공 : 월 144,000원(바우처 지원 128,000원, 본인부담 16,000원)
- ▶ 주의사항 :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대상자 선정 이력 있을시 향후 사업연도에 재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및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특별공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이며 신청 시점에 월세 거주하는 장애인가구
- 자녀가 장애 1급 또는 2급이며 신청시점에 월세 거주 중인 한부모가구
-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요건 적용)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 지원내용

- 보 증 금 : 2인 이하(세대당 80백만원), 3인 이상(세대당 90백만원)
- 입주기간 : 2년 거주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최장 6년가능)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

- ▶ 신청대상 : 장애인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내용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서비스 대상

▶ 신청대상

-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또는
-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서비스 내용

▶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출산여부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 2014년 출산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9조 2항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생활 향상에 기여

서비스 대상

- » 신청대상
 - 1)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일반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 » 수리대상 보장구 : A/S 기간이 경과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20만원까지 지원(연간)
 - 일반 등록장애인 : 수리비의 10만원까지 지원(연간)
 -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 보장구 수리 전 동 주민센터에 수리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수리의뢰서 발급받아(구청에서 대상자 확인 후 수리의뢰서 등기 발송) 중랑구 지정 수리업체에 보장구 수리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생활관리를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 지원기준 : 정신장애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진단서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46,000	3,719,000	5,308,000	5,969,000

서비스 내용

- » 이용자 증상과 기능수준에 따라 상담, 위기관리, 건강관리, 일상생활, 사회 적응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금액 : 20만원
- » 본인 부담금 : 2만원
- » 지원기간 : 12개월(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이용

- » 지원절차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
- » 이용방법 : 선정된 후 익월부터 이용하며 서비스 제공받은 후 결재

서비스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영지원	02-933-2929	중랑한울	02-878-9964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건강증진과 ☎ 02-2094-0853

기타 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만0세 ~ 12세 장애아동	• 지원단가 - 종일반: 40만6천원/월 - 방과후: 20만3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2만원/월 ※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h>근로시간</th><th>급여</th></tr> </thead> <tbody> <tr> <td>장애인복지 일자리</td><td>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업무</td><td>월 56시간</td><td>월 313천원</td></tr> <tr> <td>일반형 일자리</td><td>지자체 관공서 등에 배치 자치단체에 맞는 업무수행</td><td>주5일 40시간</td><td>월 1,167천원</td></tr> <tr> <td>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td><td>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 관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td><td>주5일 25시간</td><td>월 1,000천원</td></tr> <tr> <td>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td><td>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노인요양보호사 보조</td><td>주5일 25시간</td><td>월 731천원</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업무	월 56시간	월 313천원	일반형 일자리	지자체 관공서 등에 배치 자치단체에 맞는 업무수행	주5일 40시간	월 1,167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 관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	주5일 25시간	월 1,000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노인요양보호사 보조	주5일 25시간	월 731천원	시군구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 모집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업무	월 56시간	월 313천원																				
일반형 일자리	지자체 관공서 등에 배치 자치단체에 맞는 업무수행	주5일 40시간	월 1,167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 관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	주5일 25시간	월 1,000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노인요양보호사 보조	주5일 25시간	월 731천원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만10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 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읍면동에 신청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명의를 1~3급의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자치단체 조례예의함)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관할 세무서
장애인의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관할 세무서
상속세 상속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상속세 과세법」에서 500만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관할 세무서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관할 세무서
장애인 고용 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	고용노동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 시청각장애인, 난청 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 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 난청노인용 수신기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이양 사업 및 지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 로 청력회복이 가능 한 저소득 청각장애 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수화통역 센터운영	• 청각 · 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수화통역 센터
공동생활 가정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 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주간 · 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 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 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
여성장애 인 가사도우 미 파견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 장애인 복지관
문화체육 시설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 급 장애인과 동행하 는 보호자 1인	• 입장요금 무료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제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운전 차량 - 장애인 승차 차량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 부여	장애인 등록증 제시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철도,도시 철도 요 금감면	• 등록장애인	•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 4~6급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 (토,일,공휴일 제외)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장애인 등록증 제시
유선전화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명의 전화1대	• 시내: 50% • 시외: 월3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50%	관할 전화국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자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인자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해당 이동 통신사
TV수신 료 면제	• 시 · 청각 장애인 가구	• TV수신료 전액 면제	한전 사업소
무료법률 구조제도	• 등록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심의한 사건에 대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대한법률 구조공단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 국내선 50%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	장애인 등록증 제시
연안여객 선 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1~3급: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장애인 등록증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 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할인	• 중증장애인(1~3급)	• 주택용 도시가스에 한해 할인	해당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3급)	• 정액감액 : 월 8천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여성 ·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2
2.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83
3.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84
4.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5
5.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86
6. 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	87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8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

서비스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소득판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서비스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지원 - 신선배아 이식 3회(각 19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내), (동결배아 미 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	최대 3회 지원, 1회당 50만원 범위내(기초생활 수급자도 동일)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이용방법(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1차시에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정부지원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 신청 가능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 **문 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맘편한카드)

-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한 카드
- 우리카드 홈페이지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신청안내)

서비스 대상

- **신청대상** : 만 18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헌인서로 임신 확인된 산모)

서비스 내용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 **이용방법** : 우리은행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구비서류 우리은행 우편으로 송부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본인,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가능
 - ※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명은 반드시 임신부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함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문 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산모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 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자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비(맘편한카드)도 신청 가능(83쪽 참고)

서비스 내용

- ▶ 임신 동안 받는 임신·출산에 관련 진료비용 중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 ※ 다태아 임신부는 20만원 추가 지원
- ▶ 지정요양기관 중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상병에 한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한약, 침약 등)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 ※ 1일 6만원의 사용한도 폐지(2013. 3 ~)
- ▶ 전자 바우처(고운맘카드)로 제공
 - 건강보험가입자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
 - 의료급여 수급자 :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
- ▶ 카드 수령 후부터(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결정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미사용 지원금 자동 소멸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 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관련서류 제출
 - 의료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로 관련서류제출
- ▶ 문 의
 - 건강보험 가입자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 의료급여 수급자 : 중랑구 사회복지과 ☎ 02-2094-169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

가구 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인
가구소득(천원)	2,014	2,875	3,233	3,422	3,612	3,801

-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사산 및 유산 포함/ 만 4개월 이상 임신 유지시 => 30일 이내 의사소견서 첨부)

서비스 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이용권 지급
- ▶ 지원기간 : 2주(12일) 원칙
 -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 산모 4주(24일)
- ▶ 이용시간 : 평 일 09:00~17:00 (8시간, 도우미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09:00~13:00 (4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 ※ 대리인 신청시 산모와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산모수첩(출산 예정일 기재 필)
 -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 쌍둥이 : 의사소견서 첨부
-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 ▶ 문 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

사업 대상

- ▶ **지원대상** : 만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 ▶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별 관할지역 내 거주
- ▶ **소득수준** :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 ▶ **영양위험요인** : 빈혈·저체중·성장부진 중 1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사업 내용

구 분	서 비 스 내 용
영양교육 및 상담	- 각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식생활/영양 관리, 모유 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가정배달방식 전달이 원칙)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형태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시, 자격재평가, 중간평가, 사업종료 시 - 빈혈 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현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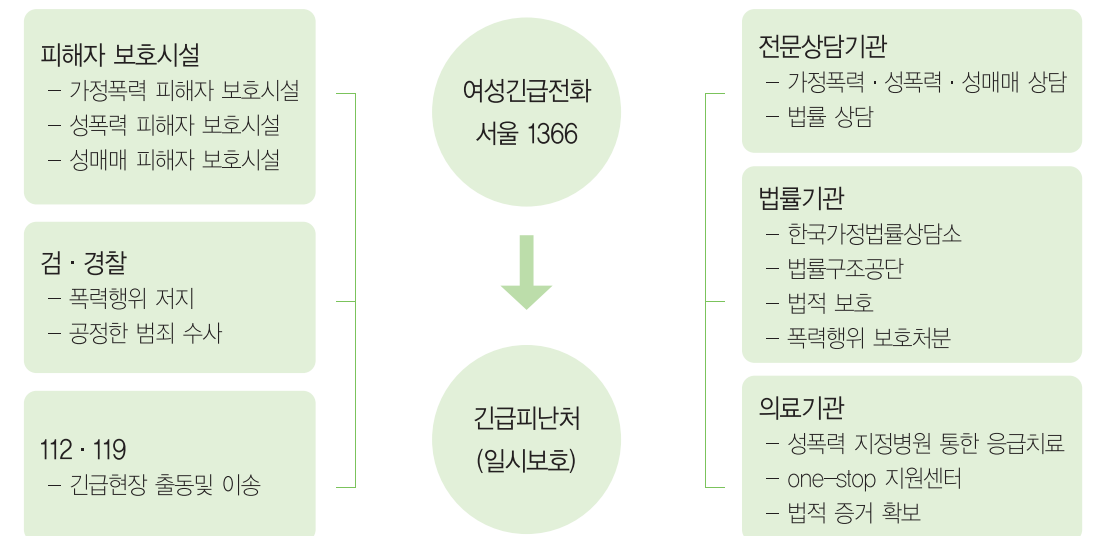
-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접수로 대기자 신청
- ▶ **구비서류** :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자동차 보험증권, 산모 수첩
- ▶ **근거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제11조
- ▶ **문 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47~9

여성 긴급전화 서울 1366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서비스 내용

- ▶ **상담안내**
 - 1년 365일 24시간 HOT-LINE 운영, 10명의 상담원이 1일 3교대 상담
 - 12개 기관 전화회선 구축 및 긴급 피난처 운영
- ▶ **상담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기타 여성폭력 관련 상담
 - 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담
 - 보호시설연계, 전문상담기관 안내, 직접 상담, 정보제공 등
- ▶ **상담방법** :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문자상담
 - 전화상담 : 10시~17시까지 전문상담기관 연계, 그 외 시간 1366 상담원 직접 상담
 - 사이버 상담 : 공개·비공개 상담 내용을 홈페이지 (<http://www.seoul1366.or.kr>)상담실 혹은 이메일(seoul1366@hanmail.net)로 상담원들의 답변을 통해 상담
- ▶ **상담 처리 및 절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우리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

서비스 내용

» 방문교육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통·번역서비스 사업**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아동의 언어발달정도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아동 부모와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문 의**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577-5432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435-4149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1. 무상보육 지원	90
2.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93
3. 아동급식 지원	94
4. 꿈나무카드 발급	95
5.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서비스)	96
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97
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8
8.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99
9. 가정위탁아동 보호	100
10. 드림스타트 서비스	101
1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02
12. 청소년증 발급	103
13.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104
14.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요약	105



무상보육 지원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만0~5세 영유아(전계층 소득·재산 수준 무관)
 -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및 만12세이하 장애아동
 - ※ 단, 만5세이하 영유아의 경우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도 가능
 - **유아학비** : 유치원 이용 만3~5세 유아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영유아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연령	보육료	유아학비	연령	양육수당
만0세 (2014년이후 출생)	406천원		0~11개월	200천원
만1세(2013년 출생)	357천원		12~23개월	150천원
만2세(2012년 출생)	295천원		24개월~만5세	100천원
만3~5세 (2011~2009년 출생)	220천원	220천원	장애아 (0~35개월)	200천원
장애아 (2002년 이후 출생)	406천원 * 누리과정(만3~5세) : 420천원		장애아 (36개월~만5세)	100천원
지원방법	아이행복카드 (KB국민,우리,하나,NH농협, 신한,BC,롯데)		지원방법	현금 (매월25일경 지급)

- 기존 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웁카드)도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계속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 ▶ **문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50

유의 사항

- ▶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변경된 서비스로 지원 가능
-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영아종일제는 중복지원 안됨
-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며 소급지원 안됨
- ▶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격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지원 안됨
- ▶ 서비스변경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사전에 변경처리 기준 확인 필요
 -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

변경 구분	지 원 내 용	
	15일 이내 변경신고 시	16일 이후 변경신고 시
양육수당 ↓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 서비스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 해당월 변경 이전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신규서비스 지원) *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기준

변경 구분	지 원 내 용	*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보육료 ↓ 영아 종일제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해당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익월 1일부터 영아 종일제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해당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 부터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하여 저출산 시대에 민·관·시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만들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

카드 종류

-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기능을 겸한 다둥이행복카드
- ▶ **체크카드** : 체크카드 기능을 겸한 다둥이행복카드
- ▶ **신분 확인용 카드** : 다자녀 가정임을 확인해주는 카드

서비스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로 물품구매 및 시설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 ▶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카드 신청
(2014. 8. 1 이후 온라인 신청 불가)
 - ※ 우리은행 다둥이행복카드 전용고객센터 ☎ 1599-9977
 - 신분 확인용 카드 : 동 주민센터
-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67

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지원 연령

-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연령

-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내용

-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 취 학 아 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지자체에서 실시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법

- ▶ 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부식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

근거법령 및 문의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3

꿈나무카드 발급

아동급식지원 방법 중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욕구에 맞는 일 반음식점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이용 방법

- ▶ “꿈나무카드”표지가 부착된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를 하면 식사비는 결제 즉시 식당에 지급

구 분	사용가능금액	사용범위
1일 1식	1일 4,000원 사용	한달동안 급식비 범위 내에서 1일 1회 8,000원까지 사용가능
1일 2식	1일 2회 8,000원까지 사용 가능	1일 한도가 8,000원 이므로 다음날 이월 안됨

구 분	토·일·공휴일	평 일
토·일·공휴일 지원대상자	결제 O	결제 X
평일만 지원 대상자	결제 X	결제 O

꿈나무카드 가맹점

- ▶ 구청 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 : 중랑소식-구청소식에서 확인 가능

주의 사항

- ▶ 대상자 본인인 청소년·아동만 사용 (어른 및 타인 사용발견시 급식대상에서 제외)
- ▶ 이사 또는 급식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 반납
- ▶ 분실·훼손·도난시 등 주민센터로 신고
- ▶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이월 안됨

근거법령 및 문의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3

지역아동센터(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급식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 대상

▶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2

소 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망 우 3 동	온 세 계 지 역 아 동 센 터	02-2209-5579
	참 줄 은 지 역 아 동 센 터	02-493-3393
망 우 본 동	망 우 지 역 아 동 센 터	070-8732-1025
	솔 로 몬 지 역 아 동 센 터	02-439-8679
	열 린 지 역 아 동 센 터	02-435-2151
	중 랑 재 미 지 역 아 동 센 터	070-7787-5154
면 목 2 동	동 그 라 미 지 역 아 동 센 터	02-492-8728
	성 심 지 역 아 동 센 터	02-494-5072
면 목 3 · 8 동	참 사 랑 지 역 아 동 센 터	02-493-0009
	녹 색 지 역 아 동 센 터	070-8688-4343
	동 원 지 역 아 동 센 터	02-433-3324
	면 목 지 역 아 동 센 터	02-2209-6010
면 목 4 동	만 나 지 역 아 동 센 터	02-438-9191
	즐 거 운 지 역 아 동 센 터	02-495-9839
면 목 5 동	씨 앓 지 역 아 동 센 터	070-7434-3006
	차 오 름 지 역 아 동 센 터	02-433-2077
	파 란 나 라 지 역 아 동 센 터	02-494-0476
	서 울 지 역 아 동 센 터	02-432-9004
면 목 본 동	푸 른 꿈 지 역 아 동 센 터	02-972-7179
	참 이 랑 지 역 아 동 센 터	02-433-3131
	한 길 지 역 아 동 센 터	02-435-6022
	파 랑 새 지 역 아 동 센 터	02-432-5622
목 2 동	마 루 아 라 지 역 아 동 센 터	02-6671-7533
상 봉 1 동	중 화 지 역 아 동 센 터	02-438-3025
상 봉 2 동	생 명 강 지 역 아 동 센 터	02-438-0118
신 내 1 동		
신 내 2 동		
중 화 1 동		
중 화 2 동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

지원 대상

▶ 전 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 · 소견서, 임상병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교사추천서가 있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 의뢰된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서비스 내용

▶ 아동의 증상에 따라 심리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놀이, 인지, 미술)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 혼합하여 월 4회 제공

서비스 이용 금액

(단위: 원)

구 분	1 등 급 (월평균소득50%이하)	2 등 급 (월평균소득100%이하)	3 등 급 (월평균소득120%이하)
본인부담금	16,000	32,000	48,000
정부지원금	144,000	128,000	112,000

제공기관 (중랑구 소재 13개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자광아동가정상담원	02-492-3623	서울시 망우청소년수련관	02-492-7942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107	소나무상담복지센터	02-493-0711
성모마음정신과의원	02-972-4300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02-3421-1988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02-971-8085	123언어심리연구소	070-8234-7123
샘물아동발달연구소	02-2248-2221	헤인언어발달연구원	02-432-8962
우리언어치료실	02-432-5550	코끼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02-977-6136
하일렌예술상담교육치료센터	02-432-5550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에 직접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대상 및 시간

	시 간 제	영아 종일제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만 3개월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	연 480시간 이내	월 120 ~ 200시간 이하

지원 내용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의 등·하원 지도 등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	돌보미수당 시간제 이용요금 : 시간당 6,000원		돌보미수당 영아종일제 이용요금 : 월 120만원 (월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0세(만 12개월 이하)		1세(만13~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2,487천원)	4,500원	1,500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나형	50~70% 이하 (3,482천원)	2,700원	3,300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다형	70~100% (4,974천원)	1,500원	4,500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라형	100% 초과	-	6,000원	48만원	72만원	42만원	78만원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 ▶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및 아이돌봄지원법
-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66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서울장학재단)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고교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선발 대상

- ▶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최저생계비 150%)
- ▶ 긴급한 위기가정의 자녀
 - 최저생계비의 170% 이내의 계층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경제상황 악화로 긴급하게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 학교장 또는 구청장이 추천한 학생

지원 내용

- ▶ 선발 해당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
(단, 특성화고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선발 절차

- ▶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행복e음 소득·재산조치를 통해 세대원의 소득인정액 확인

Hi Seoul 장학금 지원계획 통보 → 학교장추천 → 자치구별 생활실태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 하이서울장학위원회심의 → 장학생선정/학비지원

문 의

- ▶ 서울장학재단 ☎ 070-8667-3280 / www.hissf.or.kr
- ▶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895

참고사항

-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가능
☎ 1599-2000 / www.kosaf.go.kr

가정위탁 아동 보호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서비스 내용

-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효정신탄양비	50천원/세대·년2회 (설, 추석)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대학입학금	3,000천원/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자립정착금	5,000천원/인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이 종료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직업훈련비	600천원/인·분기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600천원/인·분기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자
양육보조금	120천원/인·월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받는 아동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3

드림스타트 서비스

보건·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

서비스 대상

- ▶ **0세(임산부)~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 ※ 기초수급가정 및 법정한부모 가정 우선 지원원칙

제 공 절 차

- ▶ **접수 및 초기상담 → 욕구조사 및 대상자 선정 → 서비스지원**

서비스 내용

분 야 별	서 비 스 내 용
신체/건강 서비스	-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마음과 신체 발달 증진 - 취약계층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인지/언어 서비스	- 취약계층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정서/행동 서비스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가족 및 통합지원서비스	- 전문사례관리자 1:1 가정방문 지원 - 부모의 자긍심 강화 및 양육기술 지원

근거법령 및 문의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37조, 시행령 제37조
-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5~7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1~2년간 기초적인 생활·건강·학업·자립 지원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연령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인 자
(단, 생활, 건강지원은 최저생계비 150%미만)

서비스 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청소년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 중랑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청에 신청 → 가구 소득액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 문 의 :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923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신분확인 및 할인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보장

발급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학생여부 관계없음)

발급 절차

- 읍·면·동 및 시·군·구(신청) → 「행복e음」등록 → 한국조폐공사(접수·발급)
→ 시군구(등기우편발송) → 읍면동(개별교부)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

- 구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및 사진1매 (임시증 필요시 추가 1매 필요)
- 소요기간 : 15일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발급신청확인서' 발급가능)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 문 의 : 보건복지부 ☎ 129 /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923

〈 중랑구 소재 청소년 시설 〉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중랑청소년수련관	중랑구 용마산로 217(면목동)	02-490-0516
망우청소년수련관	중랑구 송림길 156 (망우동)	02-492-7942
용마청소년독서실	중랑구 용마산로 393, 용마문화복지센터4층 (면목동)	02-496-8689
신내청소년독서실	중랑구 망우로65길 20, 2층(신내동)	02-434-3887
면목청소년독서실	중랑구 동일로 619 (면목동)	02-439-4692
망우청소년독서실	중랑구 봉우재로 233 (망우동)	02-432-8030
양원청소년독서실	중랑구 송림길 172 (망우동)	02-432-0524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 대상

- ▶ 20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및 초등학교 신입생
- ▶ '15년 초·중·고 학생중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순위	자격소득인정액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기초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	○	○		○
3	법정 차상위	○	○	○		
4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5	학교장 추천	○	○	○		

서비스 내용

-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구 분	대 상	내 용
고교학비	고1~고3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고1학년만 해당)
급식비	고1~고3학년	고교학기 중 중식비 전액 (평일)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초1~고3학년	연 60만원 내외 지원
교육정보화지원	초1~고3학년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신청 방법

학부모가 아래 ①, ②의 방식중 선택하여 신청

- ① 온라인 신청 : 원클릭(onecli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② 방문 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 문 의 : 서울시 교육청 교육비지원 상담센터 ☎ 1544-9654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2-2094-1625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요약

바우처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 노인중 (소득 150%이하)	- 방문(27~36시간),주간(9~12일) - 가사, 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65세이상(소득120%이하)	- 건강상태점검 - 운동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활동지원	1~2급 장애인(6세~65세미만)	- 기본(47~118시간), 추가(10~273시간) -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출산(예정)일 前 40일 또는 後 30일 이내 (소득50%이하)	- 단태아(2주), 쌍태아(3주), 삼태아(4주)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만2세~6세아동(소득100%이하)	- 15,000원~25,000원 - 독서도우미파견(책읽어주기, 독후활동 등)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만18세이하 문제행동(ADHD) 위험군 아동 (소득 120%이하)	- 심리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월4회) - 부가서비스 :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부모훈련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3급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기초, 차상위)	- 24~27시간 - 가사간병서비스제공
발달재활 서비스	만18세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 (소득150%이하)	- 월14~22만원 -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등 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	만10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 100%이하)	- 월16~22만원 - 발달진단·심리상담서비스, 언어·청능치료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 (소득120%이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월4회 - 자녀특성에대한이해, 부모역할이해 및 역량강화,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기증 이해 및 강화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정신장애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소견자 (소득 120% 이하)	- 월 20만원/ 월4회 - 상담, 위기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주거 복지서비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108
2. 버팀목 전세대출	109
3. 국민임대주택 지원	110
4. 공공임대주택 지원	111
5. 영구임대주택 지원	112
6.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114
7. 기존주택 전세임대	115
8. 신혼부부 전세임대	116
9.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117
10. 긴급 주거지원	118
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19
12. 장기안심주택 지원	120
13. 서울형 주택 바우처	121
14.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122
15. 희망의 집수리 지원	123
16. 주거복지 주요내용	124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준비생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 2% 금리로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대출제도

서비스 대상

-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35세 이하자
-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현재 희망키움통장(I 또는 II)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 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이 불허/중단되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급여자이더라도 대출 허용

대 상 주 택

-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보증금 1억원 및 월세액 6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금 리 ▶ 연 2%(변동금리)

한 도 ▶ 매월 30만원(최장 2년)

상 환 방 법 ▶ 3년 만기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취 급 은 행 ▶ 우리은행 전 지점

연락처 및 사이트주소

-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국번없이 129번
-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국번없이 126번

※ 월세 대출금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융자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은 폐지하고,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연2.7~3.3%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제도

서비스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대 상 주 택 ▶ 임차 전용면적 85㎡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오피스텔(85㎡이하)을 포함)

대 출 한 도 ▶ 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00백만원)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상 환 기 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 (2년 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금 리

- ▶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금리 1%p 인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확인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취급은행 및 연락처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 은행에 대출금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융자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및 주택자금 지원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

-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자체·지방공사·주택공사 등)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 자산 소유 기준에 따른 신청 제한 있음

구 분	입 주 자 격	입 주 자 선 정 순 위
전용면적50㎡ 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①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 1, 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동일순위 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내 경쟁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①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서비스 대상

-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80% 수준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LH공사, SH공사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자의 입주자모집 공고 후 신청
- ▶ 근거법령 : 보증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문 의 :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는 모든 주택임대지원 서비스

입주대상

- ▶ 전용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 전용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입주자격

구 분	입 주 자 격
일 반 공 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주 ※ 순위·순차에 따라 선정
다자녀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자녀수, 무주택 기간 등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노부모 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
특 별 공 급	신혼부부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생애 최초	근로자(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 납입금이 600만원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당첨자 선정기준 : 추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기관 추천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 북한이탈주민 포함

신청방법

- ▶ 문 의 :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영구임대주택 지원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자격 유지시(2년마다 재계약)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 가능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입주자 선정

입주대기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배정에 의한 종합 점수 순으로 입주대기자 선정

서비스 내용

-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임대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 임대절차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 (LH공사, SH공사)가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 근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영구임대주택 선정 기준표

[별표 1] (개정 2013. 10. 17)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구 분	배 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세대주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 세대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유형 3가지)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7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 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4	4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 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 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공사, LH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등록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세대주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서비스 내용

-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서울지역 50㎡의 경우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15만원 수준)
-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LH/SH공사가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를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 LH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등록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세 부 내 용
전세금 지원한도액	호당 8,000만원의 95%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최장20년) 가능

신청 방법

-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LH/SH공사가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신혼부부 전세 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며, 그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서비스 대상

	세 부 내 용
전세금 지원한도액	호당 8,000만원의 95%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최장20년) 가능

신청 방법

-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LH/SH공사가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LH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서비스 대상

소년소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 지정, 읍·면·동 관리
교통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 ※ 교통안전공단 지정·관리
가정위탁 아동	대리양육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이며,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지자체에 신고 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장 추천자 한함

※ 단, 지원신청시 6월 이내에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 지원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까지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공공임대주택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가구당 전세금한도액 11,25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금액한도 없음
- ▶ 지원조건 :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
 - ※ 단, 만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 자격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함

신청 방법

-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 문 의 :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 02-2094-1793

긴급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

서비스 대상

» 지원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서비스 대상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 ※ 재계약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임대조건

구 분	전용면적	임 대 료 수 준
매입임대	60㎡ 이하 (1인 40㎡ 이하)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보증금 100~400만원 월 임대료 1~10만원 수준)
전세임대	85㎡ 이하 (1인 50㎡ 이하)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보증금 225~375만원 월 임대료 6~11만원 수준)

- ※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서류 및 문의처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5
또는 LH공사 ☎ 1600-1004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자활기반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서비스 대상

- » 신청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 선정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임대조건

구 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 50만원	임대보증금 : 250~350만원
	월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50만원	전세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운영기관이 LH공사와 계약한 동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에서 각 호별 임대조건결정	
국민임대	• 07.11.21. 이전부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 임대주택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임대조건 : 주택규모(26㎡~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 문 의 : LH공사 서울지역본부 ☎ 02-1600-1004 또는 해당 운영기관

장기 안심주택 지원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최대 6년까지 특별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선정기준

자 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자 동 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미만인 무주택세대주 * 가구원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임 * 월평균 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 × {1 - (0.1 × 경과년수)}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공급유형	운 영 방 식	거주기간
보증금 지원형	·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5%초과 인상분 무이자 지원	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 문 의 : SH공사 ☎ 1600-3456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50%이하인 자 중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주 택 바 우 처
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나)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거주 1년 이상인 가구 라) 월세 거주가구(※준주택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마)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인 가구 ☞ 상기의 다), 라), 마를 모두 만족하는 가), 나) 가구가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 주택바우처 신청시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동시 신청하여 소득조사 시행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주 택 바 우 처
지원금액	1인 43,000원 ~ 6인 이상 72,500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대상	주택소유자 계좌 입금 또는 임차인 계좌에 입금

▶ 선정기준

(단위 : 원)

기 준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최저생계비 120%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최저생계비 150%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또는 동 주민센터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경감시켜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 ▶ **사업내용** : 단열·창호교체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빈곤해소에 기여함.
- ▶ **지원내용**
 - 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 창호공사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시공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 물품지원 : 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지원
- ▶ **가구당 지원한도**
 - 가구당 120만원으로 하되 시공지원가구 중 20%범위 내에서 가구당 150만원까지 가능

사업추진절차

1. 준비작업 -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2. 지원가구 및 지원내역 결정 : **대상가구선정** (사업위탁 복지관 자체 선정 및 동 주민센터 추천)
 - 시행기관선정 → 시공업체선정 → 현장조사
 3. 지원 및 정산 : 계약체결 → 시공 및 물품지원 → 감리 및 평가 → 정산 및 대금지급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3

희망의 집수리 지원

저소득층을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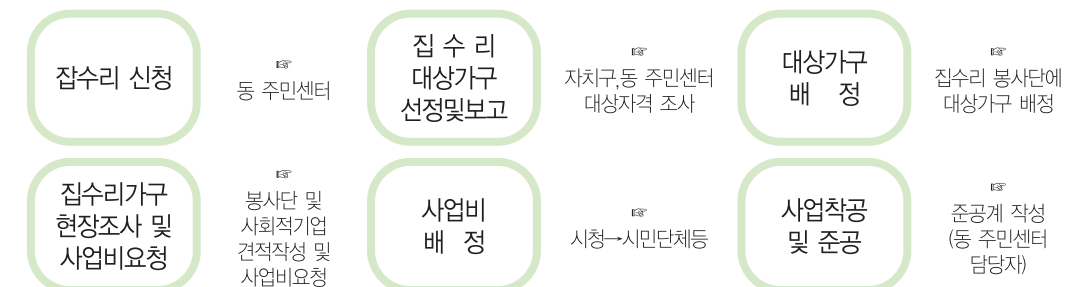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대상범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 ▶ **수리가능시설** : 100만원이내에서 주거에 필요한 13개 표준공정* 및 기타사항(경미한 수리)
 - ※ 13개 표준공정 : 도배, 장판, 단열(벽), 도어, 방수, 샷시, 처마,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정벽공사, 타일(화장실, 주방), 페인트, 전기
- ▶ **수리제외시설** : 보일러 등(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 중인 공정)
- ▶ **추진내용**
 - 상반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반기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 다자녀, 다문화, 외국인근로자도 수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문 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3

주거복지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다가구 매입임대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생활 안정 도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재건축 매입임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국민임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가능)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2,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3,000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9,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0,0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7,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

